

사적복제 보상금제 도입 중지 재요청 건의

본고는 전자업계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전 경제단체들과 공동으로 저작 재산권자들만을 위해 제도 자체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경제발전은 물론 사회발전에도 역행한다는 점을 들어 동제도 도입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우리 산업계는 물론 전 경제계의 심각한 우려를 가져와 동제도 도입 추진을 즉시 중지하여 줄 것을 관련업계 연명으로 본회에서 상공자원부, 문화체육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등에 대정부 건의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밝힌다. (註)

1. 당면 애로건의

동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우리 산업계의 현 여건을 감안하여 동제도의 도입은 일본 등 외국에서의 사례와 같이,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 보다도, 시간을 갖고 우선 이해 당사자 간에 긴밀한 협력체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협의체 즉, 이해 당사자간에 합동으로 우리나라의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그 협의체에서 동제도 도입의 필요성 여부, 필요시 도입 시기,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동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2. 건의 배경

전자·정보산업은 현재 우리나라 총수출의 27%를 담당함으로서, 그동안 고도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온 산업이며 향후 고도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은 물론, 복지산업사회를 선도적으로 실현해나갈 전략 산업이다.

최근 우리 전자·정보산업은 과도기로, 국제 경쟁력의 악화, 국내외의 경기침체, 축적된 기술부족 등으로 인해 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시기에 문화체육부는, 상업적이 아닌 가정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녹음, 녹화를 함으로서 저작 재산권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여, 그 보상금 형식으로 녹음기, 녹화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일정액을 징수토록 하는 이른바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본회에서는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과 함께 동제도 도입을 철회할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이를 계속 추진함으로서 전자·정보산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가져오고 있다.

3.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의 도입시, 문제점

1) 동제도 자체의 문제점

① 사적복제는 소비자가 갖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권, 저작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 경우도 저작재산권의 피해를 인정하여 보상권을 주느냐, 하는 논란이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는 '85년, '86년, '88년 3차례 걸쳐 동제도 도입을 검토하다가 입법을 철회한 상태이며, 미국은 가정에서 녹화기로 복제하는 것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84년에 미 법원에서 판결('84 Batamax)

되어 이 부분을 삭제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동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적인 공감대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② 사적복제 보상제를 인정한다고 해도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사적복제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저작재산권자들이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가 입증되어야 그 보상금제도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인 바, 단순히 금년에 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이 디지털녹음기 1개 품목에 적용했으나 우리도 금년에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실제로 미국, 일본 등은 10~20년 동안(일본 '64년부터) 저작권자들이 피해 입증을 위한 여러 각도의 조사를 해온 바 있다.

기술적으로 볼 때, 1개 가구에 녹화기 1대만 갖고는 법으로 허용된 방송의 녹화 외에 저작물의 녹화는 불가능 한데, 과연 우리나라 가정에서 녹화기 2대 이상 보유가구가 어느 정도인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91년부터 프로덕션(녹화)업계에서 복제를 할 수 없는 장치를 도입,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적복제로 인한 피해를 내세울 수 있는지?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단순히 녹음기, 녹화기, 테이프 등을 보유하고 있어 사적복제가 가능하다는 점만 갖고, 사적복제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③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는, 사적복제 행위자와 저작재산권자 간에 발생하는 제도임에도, 동제도(안)에는 보상금의 징수대상을 제조업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징수방법도 특정인들의 사권에 속하는 보상금을 마치 세금처럼 원천징수토록 하고 또한 미납자에 대해서는 처벌토록하고 있는 것도 모순이다.

④ 동제도(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보상금액의 규모와 그 금액의 분배에 대해서 법률이 아닌 하위의 시행령으로 규정토록 하고 있어, 동제도의 도입 목적이나 보

상금의 규모, 보상금의 사용 용도 등이 불분명하고 행정 남용의 우려도 크며, 그로 인하여 기업의 위험 부담이 상존하고 있다.

⑤ 현재 우리나라가 도입코자 하는 동제도는 그 대상품목을 5개 품목으로 규정 함으로서 사적복제라는 1개 사안에 대해 2종, 3종으로까지 저작권료(보상금도 일종의 저작권료에 포함)를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즉, 공테이프 판매시 1차로 사적복제 보상금을 내야하고, 그 공테이프에 녹음이나, 녹화시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며, 또한 그 테이프를 듣거나 보기 위한 녹음기나 녹화기를 구입시에도 사적복제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⑥ 저작 재산권자 측은, 우리나라에서 동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우리나라의 현 실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독일 등 일부 국가의 시행 사례만을 들어 동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세계적으로 대다수의 국가, 특히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이 제도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 일본은 60년대부터 현재까지 10~20여 년간의 논란 끝에 방송의 사적녹화는 정당한 것으로 인식하고 다만, 녹음기중 재생 능력이 뛰어난 디지털 녹음기에 한해 미국은 금년 1월부터, 일본은 금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디지털 녹음기가 보급되지 않고 개발중에 있는 단계이다.

또한 그 이외에 독일, 콩고, 형가리 등 일부 시행국들은 복제기기를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거나 국내기업이 없어 외국 투자기업에 의해, 생산 공급중인 국가들이다.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이 제도 도입으로 복제기기산업이 낙후되어 관련업계(예: BASF사)가 동제도의 폐지를 요구(일본 전파신문에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 도입을 강행코자 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들이 지나친 자기이익 주장이다.

2) 동제도 도입시 문제점

① 우리나라의 복제기기 산업은 현재 세계적인 수급 불균형, 우리 경쟁력의 약화, 축적 기술의 부족, 후발개도국의 추격 등으로 작년에 수출이 4.8% 감소, 내수가 6.2% 감소로 5.4%의 마이너스 성장에다, 매출액대 순이익률도 0.07%라는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영태전자, 백산전자, 중원전자 등의 중견기업을 포함해 모두 80여개 기업이 도산되어 종업원들이 직장을 잃고 국내외에서 실업자로 방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위 : 백만불)

구 分	생 산			수 출			내 수		
	'91	'92	증감율	'91	'92	증감율	'91	'92	증감율
복 제 기 산 업	5,482	5,188	-5.4	3,764	3,585	-4.8	1,741	1,634	-6.2
녹 화 기	1,770	1,691	-4.6	1,286	1,181	-8.2	480	444	-7.5
녹 음 기	2,410	2,276	-5.6	1,550	1,564	0.9	856	801	-6.7
복 사 기	205	194	-5.4	18	25	38.8	167	163	-2.4
자기테이프	1,097	1,027	-6.4	910	815	-10.5	238	226	-5.1

②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피눈물 나는 감량경영과 생산성 향상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 최근에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영세기업의 자금 조달 곤란 등으로 기업의 의욕이 가장 낮은 상태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판매부진 채산성 악화 등으로 기업 경영난이 가중되고 특히 약 1,000개사에 달하는 하청 중소기업은 대대적인 도산이 불가피 할 것이다.

③ 동제도(안)에 의하면, 현재는 보상의 대상을 내국인 저작권에 국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1~2년 이내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지적소유권 보호 압력의 일환으로 이 제도로 문제가 되어,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반드시 내국인 대우 압력을 받게 되어 결국은, 보상금의 상당부분이 외국인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감으로서 내국인 저작권자의 실익이 없고 공연히 새로운 통상압력의 요인만 발생케 될 요소가 크다고 본다.

④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는 결과적으로, 기업에 부과되는 또 하나의 준조세 성격의 세금으로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준조세 제도를 축소, 폐지해 나간다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상반되어, 경제 및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현재 복제기기 업계가 부담해야 할 준조세 성격의 기업부담금 제도는, 폐기물 예치금, 컨테이너 하역부담금 등 모두 14종에 이르고 있다.

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판매부진 채산성 악화 등으로 고부가 가치와 신제품 개발 여력을 상실함으로서, 앞으로 복제기기 산업은 비전을 잃고 산업기반까지 붕괴될 우려가 다분하다.

⑥ 또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산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즉, 전체 국민들에게까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문민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고통분담에 의한 물가안정화에도 역행된다.

⑦ 복제기기 즉, H/W의 개발 및 보급 확대는, 저작 재산권의 가치(S/W) 제고를 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으로 복제기기의 보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저작재산권의 가치도 작아지는 것이다.